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해역관리청이 아닌 자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·운영 근거 마련,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신승인 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민간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 시 신고절차(안 제40조의3)

-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가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고절차를 마련

나.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신고 수리 및 시설개선, 운영정지, 시설폐쇄명령, 청문 권한 위임(안 제94조제4항)

- 지방해양수산청장 위임 권한의 범위에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신고·변경신고 수리 권한,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권한, 폐쇄명령 시 청문권한을 추가함

다. 해양환경공단의 사업 중 해양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 삭제(안 제72조제2항)

라. 오염물질관리대장 제출 시 수리 권한 위임(안 제94조제5항)

-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의 범위에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오염물질관리대장 제출 수리 권한을 추가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0조의3(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신고)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관리청에게 제출(「전자정부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

1.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(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)
2. 법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확인서
3. 법 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
4.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시설규모, 처리공법, 공정흐름도, 유입폐수의 성상, 처리규모, 최종처리 방법, 환경오염방지시설 계획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서
5.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신고증명서(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

② 해양관리청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오염

물질저장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. 다만, 오염물질저장시설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이미 발급한 증명서에 변경신고 사항을 적는다.

③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해양관리청에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.

④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오염물질저장시설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폐업신고서에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해양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신고서,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신고증명서,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, 오염물질저장시설 폐업신고서의 서식은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72조제2항제4호 중 “해양환경측정기기 또는 자재·약제”를 “자재·약제”로 한다.

제94조제4항에 제2호의8부터 제2호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8.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 신고·변경신고의 수리

2의9.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, 운영정지, 시설폐쇄 명령

2의10. 법 제120조 제1의2호에 따른 시설폐쇄 명령을 위한 청문
제94조제5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3.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오염물질관리대장의 수리
제94조제4항제18호의2 중 “법 제110조제1항 및 제3항”을 “법 제110조제
3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0조의3(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신고)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관리청에게 제출(「전자정부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</u> <u>1.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(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)</u> <u>2. 법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확인서</u> <u>3. 법 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</u> <u>4.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시설규모, 처리공법, 공정흐름도, 유입폐수의 성상, 처리규모, 최종처리 방법, 환경오염방지시설 계획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서</u> <u>5.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신고증명서(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</u>

② 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.
다만, 오염물질저장시설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이미 발급한 증명서에 변경신고 사항을 적는다.

③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해역관리청에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.

④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오염물질저장시설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폐업신고서에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해역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신고서,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신고증명서,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, 오염물질저장시설 폐업신고서의 서식은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72조(공단의 사업) ① (생 략)

② 법 제97조제1항제8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삭 제

2. · 3. (생 략)

4.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기기 또는 자재·약제에 대한 성능시험

5. ~ 9. (생 략)

③ (생 략)

제94조(권한의 위임) ① 삭 제

② · ③ (생 략)
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.

1. ~ 2의7.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제72조(공단의 사업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2. ·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자재·약제

5. ~ 9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94조(권한의 위임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.

1. ~ 2의7. (현행과 같음)

2의8.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 신고·변경신고의 수리 등

2의9.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

<u><신 설></u> 3. ~ 18. (생 략) 18의2. <u>법 제110조제1항 및 제3항</u> 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신 고의 접수 19. ~ 25. (생 략) ⑤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3조제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 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 한다. 1. · 1의2. (생 략) <u><신 설></u> 2. ~ 16. (생 략) ⑥ (생 략)	<u>시설의 개선, 운영정지, 시설폐 쇄 명령</u> <u>2의10. 법 제120조 제1의2호에 따 른 시설폐쇄 명령을 위한 청문</u> 3. ~ 18. (현행과 같음) 18의2. <u>법 제110조제3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19. ~ 25.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-----. 1. · 1의2. (현행과 같음) <u>1의3.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오염 물질관리대장의 수리</u> 2. ~ 16. (현행과 같음) ⑥ (현행과 같음)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285 (044) 200 - 5826